

의안번호	2200158
의 퇴 인	백혜련 의원
회 답 일	2024. 6. 14.
추 계 번호	24A0563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에 따른 첨단연구산업단지지원처의 장(이하 “지원처장”이라 한다)은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에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성·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14조(첨단연구산업단지지원처)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첨단연구산업단지지원처(이하 “지원처”라 한다)를 둔(제1항)	의무규정
3	안 제15조(첨단연구산업단지위원회)	첨단연구산업의 육성 및 보호,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개발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첨단연구산업단지위원회를 둔(제1항)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첨단연구산업의 육성·보호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조성·지정·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첨단연구산업의 육성 및 보호,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개발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4	안 제16조(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개발 및 운영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함(제1항) 1.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2. 그 밖에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5	안 제18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및 개발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농어촌특별세·재산세·교육세 및 종합부동산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및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제2항)	
6	안 제19조(외국인투자기업등의 경영활동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의료시설·교육시설·연구시설·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재량규정
7	안 제21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연구산업단지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공여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6조(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2	안 제14조(첨단연구산업단지지원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안 제15조(첨단연구산업단지위원회)	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4	안 제16조(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개발 및 운영 지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5	안 제18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6	안 제19조(외국인투자기업등의 경영활동 지원)	
7	안 제21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2. 상세 사유

가.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

- 안 제6조에 따라 첨단연구산업단지지원처의 장이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유사사례 등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으로 추정되어 동 재정수반요인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에 해당함
 - 유사사례로는 「수산업 경제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인천 용진, 2023년, 1억 7,000만원), 「첨단기술융합 바이오신약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경북 포항, 2023년, 1억원), 「항공부품 거점단지 및 MRO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경북, 2022년, 2억 5,000만원) 등¹⁾

나. 첨단연구산업단지지원처(안 제14조)

- 안 제14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첨단연구산업단지지원처를 둘 경우 신규 채용 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1) 기본계획 수립 관련 유사사례는 조달청의 조달공고 홈페이지(나라장터)에서 검색한 결과로서 예시적으로 제시한 것임

- 첨단연구산업단지지원처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하며(제2항), 정무직인 처장 및 차장 각 1명을 둠(제3항)

□ 다만, 제정안은 동 지원처의 조직·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제4항) 구체적인 인력 소요 및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다. 첨단연구산업단지위원회(안 제15조)

□ 안 제15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첨단연구산업단지위원회를 둘 경우 회의경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동 위원회는 위원장(국무총리)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제2항)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유사 위원회의 회의경비 등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으로 추정되어 동 재정수반요인은 비용추계미첨부사유에 해당함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정부위원회 중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다음과 같음
 - －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경우 2024년 관련 예산은 1억 6,000만원으로 편성됨(“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등 운영 지원”)

[표 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요 정부위원회 현황

(단위: 백만원)

위원회 (소속)	근거법	위원 수	예산집행 (’23.10.)
수소경제위원회 (국무총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명	200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국무총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20명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정부위원회 현황」(2023. 10.)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개발 및 운영 지원(안 제16조), 외국인투자기업등의 경영활동 지원(안 제19조) 등

□ 안 제16조, 안 제19조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첨단연구 산업단지 조성·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하며, 외국인투자기업등의 경영활동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함

-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개발 및 운영에 대한 주요 지원 내용은 “첨단연구 산업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천재 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등임(안 제16조제1항제1호)
-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한 지원 내용은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 의료시설·교육시설·연구시설·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임(안 제19조제1항)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연구 산업단지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공여할 수 있음(안 제21조제4항)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개발 및 운영 등은 첨단연구 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과 첨단연구산업단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므로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제정안에 따르면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지정이 있는 때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전략 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봄(안 제8조제3항)
 - 2022년 8월 4일에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근거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재정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음

[표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주요 재정사업 현황(예시)

(단위: 백만원)

재정사업	회계·기금	2024년 예산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반조성	일반회계	1,608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보호 기반 사업	일반회계	358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 확충	일반회계	200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일반회계	1,050
배터리 아카데미 구축	일반회계	5,710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연대협력 지원사업(R&D)	일반회계	4,500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술개발지원	일반회계	2,700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지원	일반회계	900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력양성지원	일반회계	900
포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일반회계	15,406
울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일반회계	3,750
구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일반회계	20,000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90,0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2023. 8.) 및 「2024년
도 예산」(2023. 12.)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개요

1. 개 요

- (추진배경) 첨단산업의 세계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내 첨단산업 생산 및 혁신 거점으로 ‘글로벌 산업 클러스터’ 마련 필요

*첨단산업 역량은 국가산업 경쟁력 및 경제 성장의 근간이자 국가의 안보 자산

- (추진경과) 제1차 첨단위 특화단지 추진계획 의결('22.11) → 특화단지 공모('22.12~'23.2) → 특화단지 선정 전문위원회* 평가('23.3~7)

*정부 3명(산업·기재·국토부), 민간 7명(정책·지역·기술 전문가 등) 등 총 10명으로 구성하여, 지자체 PT 발표 등을 포함한 총 7차례 회의를 통해 검토 및 평가 진행

2. 특화단지 지정안

- (공모 결과)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에서 총 21개 수요 접수

반도체(15건)	디스플레이(1건)	이차전지(5건)
경기*(8), 인천(1), 충북(1), 대전(1), 전남·광주(1), 경남(1), 경북(1), 부산(1) * 용인, 평택, 이천, 화성, 남양주, 안성 등	충남(1)	충북(1), 경북*(2), 울산(1), 전북(1) * 포항, 상주

- (평가 기준) 「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상 특화단지 지정 취지에 따라,
 - ❶첨단전략기술 보유 선도기업 유무, ❷선도기업 및 관련 기업의 신규 투자, ❸산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 ❹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

- (지정안) 총 7개 특화단지 : 반도체(2)·디스플레이(1)·이차전지(4)

△ 반도체 : 용인·평택(메모리·시스템 반도체), 구미(반도체 소재)
 △ 디스플레이 : 충남(차세대 디스플레이)
 △ 이차전지 : 충북(배터리 셀), 포항(양극재), 새만금(원료), 울산(셀, 소재)

※ 소부장 특화단지 : 안성(반도체)·부산(반도체)·광주(미래차)·대구(미래차)·충북(바이오) 등 5개 지정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2023. 8.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윤주철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윤주철	02-6788-4655	yjc@nabo.go.kr